

제233회 임시회
광진구의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4. 24.

복지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제1639호
----------	--------

2020.4.24.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20. 4. 9.
- 나. 회부일자 : 2020. 4. 20.
- 다. 상정일자 : 2020. 4. 23.

2. 제안설명

가. 제안설명자 : 신용하 복지국장

나. 개정이유

현재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지급시 구 거주기간에 따른 지급 제한을 두고 있어, 타 시·군·구에서 전입 온 대상자의 경우 일정 기간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급 제한 조항을 수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복지 향상에 힘쓰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 수정 (안 제9조의4제2항)
 -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별지 제3호 서식 삭제,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통합 (안 제9조의4제5항)

라.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3.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4. 기 타
 - 1) 입법예고(2020. 3. 3. ~ 3. 24.) 결과 : 의견 없음
 - 2)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윤선영)

- 의안번호 제163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4월 9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4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
- 본 조례안은 보훈예우수당 지급시 區 거주기간에 관한 제한 규정을 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음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 개정(안 제9조의4제2항)

- 조례 제9조의4(보훈예우수당 지급)은 2018. 4. 5. 신설되었음. 입법 당시 서울시 내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곳¹⁾도 있었으나 현재는 25개 자치구 모두 지급하고 있음
- 현행 조례는 “지급기준일 현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 할 것을 명시하였으나, 개정안은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할 것으로 지급 조건을 완화하였음

1) 미지급 자치구(7곳) : 광진, 강북, 도봉, 노원, 은평, 마포, 관악

- 본 조례의 상위법인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는 국가 및 지자체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기본 취지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宣揚), 예우하는데 있음에 비추어볼 때, 우리 구로 전입한 국가보훈대상자가 관내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보훈예우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저촉됨 없이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을 존중하는 조치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서울시 타구 보훈예우수당 거주기간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현재 10개구가 거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표 1> 서울시 자치구별 보훈예우수당 거주기간 비교

거주기간 제한	자치구 수	자치구명
1년	6개	종로, 용산, 성동, 도봉, 금천, 송파
3개월	8개	광진, 중구, 성북, 강북, 은평, 마포, 강서, 강동
1개월	1개	동대문
제한없음	10개	중랑, 노원, 서대문, 양천, 구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 출처 : 복지정책과)

- 또한 자치구별 보훈예우수당 월별 지급 금액은 1만원부터 8만원까지 분포하며, 명절 및 호국 보훈의 달에 지급하는 위문금과의 중복 지급 여부 등이 예산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전반적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라 보여짐

<표 2> 서울시 자치구별 보훈예우수당 지급액 비교

지급액	자치구 수	자치구명
1만원	2개	노원, 은평
2만원	10개	금천, 중랑, 서대문, 양천, 성북, 강북, 도봉, 마포, 동작, 관악
3만원	8개	광진, 강서, 성동, 구로, 송파, 영등포, 종로, 동대문
5만원	2개	강동, 용산
7만원	2개	종구, 서초
8만원	1개	강남

(※ 출처 : 복지정책과)

나. 별지 제1호서식 개정 등(안 제9조의4제5항)

- 조례 제9조의3(위문금 지급) 및 제9조의4(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통합함.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불필요한 행정력을 줄여나가는데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됨

○ 종합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광진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거주기간 제한에 따른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구로 전입해 온 대상자들에게 기존 3개월이라는 전입 기간을 폐지함으로써 해당 수당의 지급에 대한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이 국가 유공자 명예 선양이라는 취지를 살리고 실질적인 보훈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광진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5. 토론

-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